

TaxFlash



Lower withholding tax rate on time deposit interest for exporters – new implementing regulation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에 정기예금 이자와 중앙은행 예금증서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 4 조 2 항의 원천징수세(“원천세”)와 관련한 정부령 No.123/2015(GR-123)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수출대금(*Devisa Hasil Ekspor/DHE*)을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개설된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USD 계좌는 0%~10%, IDR 계좌는 0%~7.5%의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2016년 2월 22일에 GR-123의 시행 가이드라인인 규정 No.26/PMK.010/2016 (PMK-26)을 발표하였다.

PMK-26은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이 수출대금(DHE)과 관련하여 최초로 개설된 정기예금에 한하여 일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은 정기 예금의 만기가 만료되면 정기 예금 보유자는 더 이상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기예금이 자동 만기 연장되는 경우에도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DHE 보고서로 증명.
2. 수출대금이 들어오는 수출자의 은행계좌에 대금 잔액이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용도로만 사용.
3. 정기예금은 상기의 수출대금 입금계좌와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

4. 수출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a) 수출자의 신분증;
- b) 수출대금 정보 (예: 수출액, 수령일시, 수출신고필증 (PEB)의 수량과 일자;
- c) 정기예금 계좌와 수출대금 입금계좌의 연계 확인증;
- d) 해당 정기예금이 만기연장 등으로 갱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서.

은행은 DHE 보고서를 소득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서(PPH 4(2))에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된 정기예금이 만기 이전에 인출되거나 잔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수출대금으로써 이체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 원천징수세율인 20%가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20% 원천징수세율로의 조정은 인출되는 시점이나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적용된다.

Further changes in the asset revaluation rules for 2015 and 2016

재무부는 2016년 2월 23일에 규정 No.29/PMK.03/2016(PMK-29)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5년 및 2016년에 제출되는 고정자산의 세무목적 재평가 관련 규정인 PMK-191/PMK.010/2015 (PMK-191)의 두번째 개정이다.

PMK 191 하에서는 자산재평가 차액에 대한 최종분리과세가 자산재평가 신청서 이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PMK-29는 다음 요건하에서 최종분리과세 납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1. 최종분리과세 금액이 3조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세자는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최종 재평가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a) 납세자의 추정에 근거한 최초 신청서가 PMK-29 발표 이전에 제출된 경우: 2016년 3월 31일까지
 - b) 최초 신청서를 PMK-29 발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시

상기 요건 하에서, 납세자는 자산재평가 신청기간이나 신청완료 단계에 납부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부기한의 연장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최종분리과세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가 최종분리과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2016년 12월 31일부터 납부시점까지의 일반적인 지연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Changes in Article 22 Income Tax

재무부는 2016년 2월 3일 규정 No.16/PMK.010/2016 (PMK-16)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22조(수입 등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PPh 22)와 관련한 재무부 규정인 No.154/PMK.03/2010 (PMK-154)의 다섯번째 개정이다. PMK-16은 2015년 8월 8일(PMK-154의 네번째 개정인 No.107/PMK.010/2015 (PMK-107)의 발효일) 이후로 소급적용된다.

PMK 16에 규정된 PPh 22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원자재 구매

이 경우는 조항 22에 따라 0.2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PMK-16에서는 구매하는 '원자재'를 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 및 어업 분야로부터 조달된 어떠한 산업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PPh 22는 가공된 원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금괴의 판매

생산자에 의한 금괴의 판매는 PPh 22에 따라 0.45%가 부과된다. PMK-16은 '생산자'의 범위에 제 3자를 통하여 금괴를 생산하는 회사도 포함시키고 있다.

3. 정부와 Contract of Work나

광업협력협정(*Mining Cooperation Agreement*)이 맺어진 수출업자 이외의 수출업자에 의한 석탄,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수출

이 경우 PPh 22에 따라 1.5%의 수입세가 부과된다. PMK-16은 세무상 수출금액을 본선 인도조건(FoB)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전 PMK-107하에서는 수출금액은 비용·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기준으로 결정되었다.

4. 국고 또는 조달청(BULOG, Badan Urusan Logistik)을 통한 곡물과 쌀의 구매

최초 PMK-154 하에서는 PPh 22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PMK-154의 첫번째 개정에서 면세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곡물과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PMK-16에서 동 사항에 대해 다시 PPh 22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면제규정은 DGT에서 발급되는 면제확인서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남승수 회계사 (seungsu.nam@id.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hony J. Anderson
anthony.j.anderson@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Felix MacDonogh
felix.macdonogh@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Ivan Budiarnawan
ivan.budiarnawan@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https://www.linkedin.com/company/pwc-indonesia)

 [@PwC_Indonesia](https://twitter.com/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6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